- (12)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(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·기계장치 작업)를 준수하고, 감시인을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13)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- (다) 이동 시 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전도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,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.
- (14) 그 밖의 안전점검내용은 KOSHA GUIDE M-86-2011(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)을 따른다.

6.4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

- (1) 기동 스위치는 뽑아서 작업책임자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2) 비탈면은 고임목을 설치하고,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대 내에 자재 또는 기타 공구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